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85
----------	------

발 의 년 월 일 :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 송재혁, 강동길, 강석주,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인제,  
남창진,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욱,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한 신, 허 훈,  
홍국표 의원(37명)

## 1. 제안이유

- 서울의 산업·일자리·교통·주거 등 전 분야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희부지에 직·주·락 복합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저개발권역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고자 입지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 바,
-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 신설)
- 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4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협상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4.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이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선정을 요청한 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협상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개발 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이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선정을 요청한 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대해 정의(안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안 제8조제4호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